

2021년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3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2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88건(안전번호 제2021-57871호~5895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57871호~57917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58955호~58956호는 자신이 출연한 부분의 영상을 편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58957호는 송출 중인 방송의 일부를 직접 녹화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장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2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5쪽의 음반명, 보호요청자명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음반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98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57871호~5895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7871호~5787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7875호~57880호는 3명의 민원인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7881호~57917호는 4명의 민원인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출판물,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제공한 사안 총 38건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7918호~5895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 컴퓨터 프로그램, 방송, 영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Sweet Chaos'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5804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데이식스가 발매한 앨범 전집을 5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813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780캐시에 판매중인 게임임. 해당 게임은 2015. 3. 10. 출시되었음. 제공되는 파일은 한글 무설치 버전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음.

(컴퓨터 프로그램 'AutoCAD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877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동인증 버전을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소프트웨어는 2021. 4. 출시된 최신 저작물므로, 정품가격은 월 262,185임.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57871호~5895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7871호~58954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8955호~5895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각 블로그에서 방송 '☆☆☆☆'의 한 회차 방송분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안임.
게시자명 및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게시자는 기록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해당 방송에 본인이 출연한 분량을 편집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제2021-58955호는 2017. 7. 15. 방영분의 일부를 약 21분 분량 이용하면서, 해당 방송의 스크린샷, 촬영장 사진 및 촬영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 및 소회를 함께 게시하고 있으며, 안건번호 제2021-58956호는 2015. 4. 24. 방영분의 일부를 30분 분량 이용 중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8955호~5895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 본인이 출연한 내용을 편집 또는 캡처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놓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 B 위원: 본인이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대심제가 아닌 심의위원회 심의의 특성상 당사자

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다만, 출연 계약의 형태에 따라 계약 당시에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음.

- A 위원: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통상적인 경우 저작권자가 출연자의 본인 출연 부분 이용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더불어 사안과 같은 영상물에 합법 시장이 존재하기도 보기 어려움.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소지가 큼.
- C 위원: 본 위원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임.
- D 위원: 동의함.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E 위원: 공정이용으로 불만한 사정이 있으며, 시정권고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 B 위원: 같은 생각임.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8955호~58956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

호 제2021-5895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블로그에서 방송 '☆☆☆☆'의 한 회차 방송분의 일부를 이용하면서 개인적 경험 및 감상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회차는 2018. 6. 26. 방영분으로 약 24분가량의 특정 출연진의 출연분이 편집된 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의 형식, 화면 구성 등으로 보아 TV를 통하여 송출되는 화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임.

이들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고 의결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5895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해당 안전처럼 연예인의 팬이 팬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연예인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A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음. 팬클럽 회원들이 연예인을 홍보 및 자료 공유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부결하였음. 하지만 해당 안전은 팬클럽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C 위원: 해당 안전은 재촬영한 영상저작물이라 화질과 음질 모두 음원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이러한 영상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 위원: 영상저작물을 재촬영한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존에 영화를 촬영한 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강나래 전문위원: 당시 사안은 상영 중인 영화를 영화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와 같은 일명 '도촬 행위'에 대하여서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3의3 및 제104조의6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 B 위원: 블로그 성격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해당 게시물은 게시자의 고향을 소개하는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음. 연예인이 방송에서 게시자의 고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자 그와 같은 방송 내용을 이용하여 고향을 소개 중인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기존 게시물들이 고향을 소개하고자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순 기록물이라면 부결 의견이지만, 그것이 아닌 연예인의 음원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 A 위원: 일반 국민들이 개인적인 취미생활 차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심의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우려가 됨.

- 오진해 전문위원: (같은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을 제공하면서)다른 연예인이 고향에 와서 부른 노래도 촬영하여 게시하였음.
- D 위원: 게시물의 내용에 미루어 보아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 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E 위원: 그러나 불법복제된 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바, 해당 부분을 전제하고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저작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볼 수 있겠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가 방송 송출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음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안으로 판단됨.
- E 위원: 영상의 녹화 수준이 매우 낮으며, 해당 영상의 최대 화질이 270p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상물로서의 시장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매우 어려움. 합법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전혀 없어 시장 대체 가능성이 없는 영상물로,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됨.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8957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8955호~58957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1-57871호~5895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3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